

議案番號	第 281 號
議決年月日	1995. 5 . 27. (第 33 號)



고성군규모이하제분업신고절차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提出者	固城郡守
提出年月日	1995. 5 . 10.

고성군규모이하제분업신고절차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의안 번호	281
----------	-----

제출년월일: '95. 5. 10.
제 출 자: 고성군수

1.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

양곡관리법개정(법률제4707호 '94. 1. 5.)에 따라 양곡가공업의 허가제도에서 등록 제도로 변경되어 개정된 양곡관리법제19조및동법시행령제21조1호에 의거 양곡가공업의등록은 대규모·소규모 도정업과 제분업 및 제조업으로 구분하여 도지사에게 등록 토록하고 있으나, 경상남도사무위임조례제2318호('95. 1. 16.)로 소규모 도정업 등록은 시·군에 위임하고 있으므로 구양곡관리법제16조1항 단서 규정에 의한 "일정규모이하의 제분업은 시장·군수에게 신고한다"는 내용에 의거 제정된 고성군규모이하의 제분업신고절차등에관한조례는 더이상 존치할 이유가 없어 폐지하려는 것임.

2. 본 문

고성군조례 제 호

고성군규모이하제분업신고절차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고성군규모이하제분업신고절차등에관한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 직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